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1월 13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1월 13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 충청북도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 실.국.본부의 기구 설치.

○ 실.국.본부별 분장사무의 내용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이와관련한 행정사무의 분장 내용을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감사실외 9개의 실.국.본부 설치범위와 명칭을 정함과 아울러 실.국.본부별 주요 사무내용을 분장한것이며 담당관.과의 설치범위는 국제통상협력실을 포함하여 43개 이내로한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금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행정기구의 조정에 관련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바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